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안전체험관의 기능이 재난교육 뿐만이 아니라 폭넓은 안전교육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용어를 정비하고,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월 1일·2일”로 규정된 휴관 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의 변경 및 기타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